

한겨레신문

오연서 기자

## ‘사이버 지옥’ 그 문이 열리기까지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 다큐멘터리 촬영 사진. 넷플릭스 제공

경찰서 앞 유리문 앞에서 한 여성이 발걸음을 머뭇거리다. 주저하며 한발 한발 내딛던 여성이 문을 열어젖히자, 여성의 형체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빛 속으로 사라진다. 어둠 같은 지옥에 있던 여성이 세상 밖으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지난 5월18일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의 마지막 장면이다.

나는 지난 2019년 11월 <한겨레신문> 사회부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특별취재팀에 소속돼, n번방에서 박사방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했다. 이 사건

을 취재한 기자로서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영화에 출연했다. 기자, 피디(PD), 작가, 경찰 등 24명의 ‘n번방’·‘박사방’ 추적기를 담은 영화다. 1시간45분 러닝타임 내내 추적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그 덕분에 결국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메시지다.

취재 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메시지를 곱씹어본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이 사건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은 지난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을 믿지 못해 신고를 포기했고, 피해자를 돕

는 여성단체는 언론을 믿지 못해 취재를 거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에 소홀했다. 피해자들은 ‘박사’가 검거된 뒤에 또 다시 무력해졌다.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

“〈한겨레〉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본 피해자 분을 찾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13일 ‘특별취재팀’을 꾸리자마자 시작한 건 피해자를 찾는 일이었다.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띄웠다. 제보는 텔레그램 계정과 프론트 메일(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메일 서비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스위스의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 계정으로만 받았다. 모두 보안성 좋기로 유명한 플랫폼이다. 이 두곳으로 한정해 제보를 받기로 한 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이미 ‘박사’와 가해자들에게 신상이 털린 기자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바로 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제보를 하라니, 어디에선가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메신저를 제보창구로 쓰는 이 현실이 참 아 이러니했다.

며칠 뒤 제보가 들어왔다. 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무래도 ‘박사방’ 이야기인 것 같다며 제보를 해온 것이다. 이 제보자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는 인터뷰를 주저했다. 여전히 ‘박사’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미 주소가 텔레그램에 공개된 탓에 ‘박사’의 직원들로부터 오프라인 협박을 당해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했다. 피해자와 지인은 ‘박사의 피해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나의 거듭된 설득에 결국 공감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사는 피해자한테 자신을 신고 하라고 시키기도 한 놈이에요.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박사는 피해자를 이용해 기자님한테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놈입니다. 조심하세요” 피해자를 소개해 준 그의 지인은 인터뷰 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의 뜻대로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고 통화 여건은 열악했다. 피해자는 남들이 통화 내용을 들어선 안 된다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만 나와 통화했다. 나는 피해자에게 나를 반만 드러낼 수 있었다. 이름과 소속만 간단히 소개했



2019년 11월26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 2화 기사 그래픽. 텔레그램에서 ‘박사’가 운영하는 대화방 재구성.

다. 피해자를 통해 ‘박사’가 기자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당부에 따라, 나의 위치 추적과 신분 파악이 어렵도록 회사 유선 전화기를 붙들고 피해자와 통화했다. 전화는 자주 끊겼다. 주소가 공개된 탓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뛰쳐나와 친구집에서 통화하던 한 피해자는 나랑 통화를 하다가도 친구가 귀가하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피해 내용을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있던 피해자였다. 사건 뒤 여러번 자해했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무기력이 이 피해자의 일상을 압도했다.

“박사 좀 꼭 잡아주세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뒤, 다음날 다시 통화하기로 하던 피해자는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인도 내게 전화해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망 섞인 말투로 “인터뷰 괜히 했나 보네요”라고 내게 말했다. 하루 종일 내 전화도 받지 않았던 피해자는 그날 밤 늦게서야 지인에게 연락해 “잘 있다”고 상태를 알려왔다. 나는 당장은 안심을 했지만, 걱정과 고민은 더 많아졌다. 오늘 하루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 피해자의 일상이 완벽히 되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기사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사건을 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재 초기 가졌던 포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혹시 공익적인 기사를 쓰다는 명분을 내밀어 나와 피해자를 동시에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4화에 걸쳐 나간 기사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당시 온 언론사는 ‘조국사태’라는 큰 이슈에 집중했고, <한겨레>만 외롭게 이 사건을 1면에 다뤘다. 소위 ‘받든’ 언론사도 없었다. 열어뒀던 제보 계정에는 우리 보도를 조롱하는 가해자의 메시지로 넘쳐났다. 간간이 오던 피해자의 제보 메일도 끊겼다.

그러다 상황이 바뀐 건 2020년 3월 16일 ‘박사’가 검거되고, 신상공개가

결정돼 그가 26세 남성 ‘조주빈’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다. 프로톤 메일로, 혹은 회사 메일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늘었다.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 여성들이 ‘n번방을 끝내자’며 목소리를 내자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즈음 한 피해자는 내게 새벽에 전화 해서 “재판은 언제인가요. 조주빈이 높은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이라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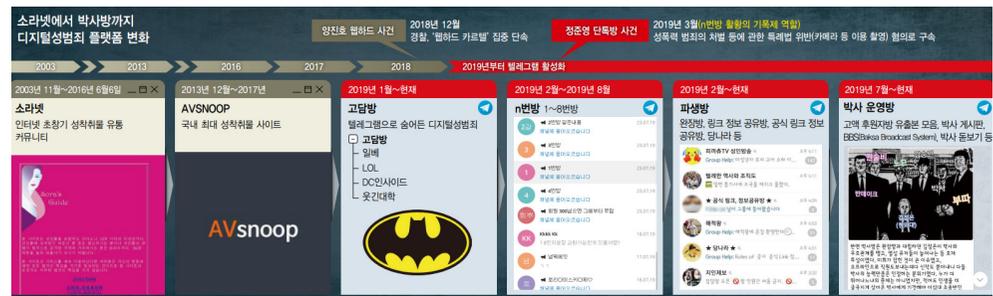
### 여성단체를 압도한 무력감과 허무함

피해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

2019년 11월 25일 <한겨레신문> 1면에 게재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 1화 기사.



2019년 11월 2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 3화 기사.



2019년 11월 2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 3화 그래픽. 2000년대 초반 ‘소라넷’부터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를 정리했다.

던 2019년 11월, 나는 여러 여성단체에도 전화 돌렸다. 이미 이런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돕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성단체에 전화해 “텔레그램에서 이런 흉악한 성착취가 벌어지고 있고, ‘박사’가 공개한 신상정보로 파악한 피해자만 수십명이지만 이들은 신고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일종의 브리핑처럼 하고 나면 돌아오는 반응은 “그런 사건은 플랫폼만 바뀌며 진화해왔는데 언론의 관심은 늘 한발짝씩 늦는다” 같은 답변이었다. “대체적으로 기획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인터뷰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 “언론은 늘 이 사안을 선정적으로만 소비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론의 ‘깜짝 관심’이 이 사건을 해결해줄 순 없다는 말이었다.

그렇만도 했다. 그보다 1년 전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이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이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흔히 단톡방 멤버들과 그곳에서 공유된 영상

에만 관심을 가졌고, 이전에 ‘웹하드 카르텔’ ‘소라넷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일어났지만 언론은 한번도 이를 뿌리뽑을 만한 보도를 하지 못했다. 여성단체는 그럴 때마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길거리에 나섰지만 언론은 여성단체의 주장을 쫓아가지 못했다. 더 선정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따라가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돌아보면, 여성단체의 이런 냉소적인 태도를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다. 여성단체는 이번에도 기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박사에게 대한 작은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전화할 때마다 여성단체에선 그동안 이 범죄가 끝날 수 없었던 이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의 문제, 무엇보다 디지털 성착취물에 수요와 관심이 없으면 ‘박사’ 같은 범죄자도 탄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수만 명의 관전자까지 함께 처벌해

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게 힘주어 말해줬다.

2020년 4월, 국회에선 ‘n번방 방지법’ 7개가 여야 이견 없이 한번에 통과됐다. 그 이후 한 여성단체 대표와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조금 허무했습니다. 여성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번에 통과될 수 있던 거였다니” 그 말은 언론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야만 언론이 움직이고,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뀐다는 씁쓸함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이버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 다큐멘터리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 조주빈 잡혀도 무력감에 억눌렸던 시간들

조주빈 검거 뒤 세상은 분노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게 호소했다. 조주빈 검거 뒤 100일째를 맞던 2020년 6월,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미 주소가 공개돼 여전히 가해자의 협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이 미흡해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상박제’라는 이 범죄 양태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경찰이 피해자 신고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에게 하는 것처럼 임시 주거지원이라도 나섰어야 했다는 여성단체의 말도 기사에 담았다.

이 기사가 나간 뒤 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나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쓴 기사냐”고 따졌다. 가해자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경찰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 이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도 아닐테다. 그럼에도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법률과 핵심 처벌 조항, 사례와 입법		
<b>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호) 등 이용 활용</b>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의 반복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b>사제</b> ① 고 구하러세 남자친구 최장범 '불법 촬영 촬영 혐의 무죄, ② 연예인 신세경씨, 음모미사가 머무는 국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방송 스태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b>필요</b> 다문화이주단 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2017년 입법 9월) - 불법 촬영을 피해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불법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안.	
<b>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b> 처벌 •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의 소지 및 배포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배포 또는 채팅, 전사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미만 이하의 벌금, •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통) 제44조(97)</b>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사제</b> '이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헬렌투비디오 설립자 손아무개씨, 징역1년6월 선고.	<b>필요</b>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018년 2월) -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근 제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2019년 11월28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 3화 기사 그래픽.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법률과 핵심 처벌 조항을 정리해 '숨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날 수사관의 한마디는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돼야만 이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명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 처벌을 지시했지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은 미흡했다. 조주빈이 잡히고 난 뒤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무력했고, 취재기자인 나도 여전히 무력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나는 2020년 11월 정치부로 출입처를 옮겼다. 징역 42년형이라는 조주빈의 1심형이 확정된 시기였다. ‘박사방 사건’이 나의 일상과 업무에서 많이 떨어진 시기였다. 정치부로 옮기고 몇달이 지난 뒤인 어느 여름날 밤, 한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전할 받았다. 그가 내게 해준 얘기는 “이직을 하고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게 겁자기 또 두려워졌다. ‘n번방 피해자’인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다시 살기가 싫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취재처가 바뀌고, 취재 분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

한 관심을 꺼선 안 된다는 다그침과도 같은 통화였다.

박사방 안에는 많게는 수만 명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처벌받은 이들은 수천명 정도다. 조주빈의 직원 역할을 했던 한 가해자는 구치소에 성착취물을 반입했다 독방에 수용됐고, 박사 ‘조주빈’은 징역살이 중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피해자는 이따금씩 내게 전화를 걸어 마치 처음 피해를 당했던 그때처럼 눈물을 흘린다.

처음 ‘박사방’을 취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 세상에 한발 단기가 두려워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여전히 반성 없이 떳떳한 가해자를 보면서 다시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진다. n번방, 그 지옥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D)